

직원인사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23
제정일자	2012.07.26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3

2012.07.26.제정 2016.04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사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직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직원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과 위원은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직원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의 결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
 - 2. 직원 인사에 관한 제규정, 규칙, 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
 - 3. 직원의 채용, 승진 심사
 - 4.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 - 5. 다른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
 - 6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위원 중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다.
- 제5조(간사) 위원회의 제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사무처 담당업무 직원이 된다.<개정 2019.07.16.>
- 제6조(회의소집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와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**제7조(의결정족수)**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



직원인사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23
제정일자	2012.07.26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3

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- ③ 위원회 안건이 위원 본인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본인이 요청을 하거나, 피당사자로 부터 기피신청이 제기되어 위원회에서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정족수는 해당 위원수를 제외한다.
- **제8조(결과조치)**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 결정되는 즉시 그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에 재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소집 등 재심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**제9조(제안자)**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 부서장이 간사에게 심의를 요구하고 간사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- **제10조(의견진술)**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, 해당 부서장 또는 관련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정계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진술 없이 심의한다.
- 제11조(비밀누설금지)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2조(자문료 등) 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외부인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연구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, 연구조사비, 여비, 수당 기타 이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3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



직원인사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23
제정일자	2012.07.26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3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